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계약서

(2023년 수가 변동 사항)

인적사항

서비스 이용자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보 호 자		연 락 처	

수가 및 급여기준 변경내용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81,750	75,840	71,620

1 등 급	일수	총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식재료비	일반(20%)	경감(12%)	경감(8%)
	1일	81,750	16,350	9,810	6,540	7,500	23,850	17,310	14,040
	28일	2,289,000	457,800	274,680	183,120	210,000	667,800	484,680	393,120
	30일	2,452,500	490,500	294,300	196,200	225,000	715,500	519,300	421,200
	31일	2,534,250	506,850	304,110	202,740	232,500	739,350	536,610	435,240

2 등 급	일수	총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식재료비	일반(20%)	경감(12%)	경감(8%)
	1일	75,840	15,168	9,100.8	6,067.2	7,500	22,668	16,601	13,567
	28일	2,123,520	424,700	254,820	169,880	210,000	634,700	464,820	379,880
	30일	2,275,200	455,040	273,020	182,010	225,000	680,040	498,020	407,010
	31일	2,351,040	470,200	282,120	188,080	232,500	702,700	514,620	420,580

3 4 5 등 급	일수	총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식재료비	일반(20%)	경감(12%)	경감(8%)
	1일	71,620	14,324	8,594.4	5,729.6	7,500	21,824	16,094	13,230
	28일	2,005,360	401,070	240,640	160,420	210,000	611,070	450,640	370,420
	30일	2,148,600	429,720	257,830	171,880	225,000	654,720	482,830	396,880
	31일	2,220,220	444,040	266,420	177,610	232,500	676,540	498,920	410,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근거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 22조.

2022. 12. 01.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01월 01일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갑' 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 설 장 한 미 희 (인)

(계약자)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사회복지법인 평은복지재단 평안의집